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

제출일자: 2002. 4
제 출 자: 달 성

□ 개정이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4호)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전면 개정코자 함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제20조(업무의 위탁)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 주요골자

○ 조례명칭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을 "의료급여"로
 ·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고 본인부담환급금, 대불금 지급 등 기타 지출업무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어 지출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안 제7조)
○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이 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와 중복되므로 동조례를 폐지

□ 개정조례안 : 붙임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복지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